##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902

발의연월일: 2025. 3. 13.

발 의 자:김예지·최수진·박덕흠

서천호 · 김선교 · 김소희

정성국 · 최형두 · 서미화

정준호 · 송석준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 높이차 이 제거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장애인 접근권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. 이와 관련해 '모두의 1층' 논의는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문턱 및 단차 등이 있는 편의시설에 진입할 수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내용으로 함. 그러나, 현행법령은 경사로가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허가요건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, 도로관리청이 구체적사유 없이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경사로와 같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접근을 위한 시설을 설 치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, 도로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,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,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61조제6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(이하 이 항에서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8 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- 2. 도로의 너비로 인하여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	행			개 정 안
제61조(도로의	점용	허가)	1	~	제61조(도로의 점용 허가) ① ~
⑤ (생략)					⑤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				⑥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점용
					허가를 신청한 자가 「장애인
					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
					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
					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
					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
					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
					설(이하 이 항에서 "시설"이라
					한다)을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
					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
					허가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
					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					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
					<u>하다.</u>
					1. 「장애인・노인・임산부 등
					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
					률」 제8조제2항에 따른 기
					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					2. 도로의 너비로 인하여 시설
					을 설치할 경우 교통에 현저
					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

정되는 경우

 3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

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

 경우